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
확인자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	환자와의 관계	
환자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확인사항	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	

본인(확인자)은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

상기 환자()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본인(확인자) _____ (자필서명)

유의사항

환자의 형제·자매가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[별표 2의2]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,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 작성합니다.

[별표2의2] <개정 2017. 3. 7.>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(제13조의3제3항 관련)

구 분	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	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	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	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	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비고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환자 본인	성명	연락처
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

신청자	성명	환자와의 관계
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연락처
	주소	

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	의료기관 명칭
	진료기간
	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

※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.

본인(또는 법정대리인)은 상기 신청인 _____ 이 [의료법]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
본인 (또는 법정대리인) _____ (자필서명)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수임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위임인과의 관계
	주 소	

위임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주 소	

위임인은 「의료법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「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임인 _____ (자필서명)